

건축생애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대한건축사협회는 K-건축과 건축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주)씨엠엑스와 건축생애관리 디지털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K-건축 구현의 일환으로 (주)씨엠엑스가 보유한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 기술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업무에 지원하고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사가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협력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현장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
- (주)씨엠엑스는 자사가 보유한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 기술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의 사업 관리 공사감리 · 해체 · 석면감리 프로세스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 나아가 두 단체는 건축물 생애관리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다.

제3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 본 양해각서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 본 양해각서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본 양해각서의 만기 및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세부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제3자에게 관련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당사자가 상호 간 사전 서면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부속합의서)

양사는 본 양해각서 상 협력과 관련하여 상호 간 비용 또는 대가와 그에 따른 조건은 별도로 협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7조 (홍보)

양사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방송·언론보도,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상대 기관의 명의를 사용을 상호 허락한다.

제8조 (기타)

- ①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제 4조, 5조 제외),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양해각서는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④ 본 양해각서에 관하여 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5월 19일

(주)씨엠엑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B동 1604호

대표이사

이 기 상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회장

석 정 훈

